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47

발의연월일: 2025. 6. 2.

발 의 자:차규근·강경숙·신장식

용혜인 · 김준형 · 김재원

이해민 • 김선민 • 서왕진

한창민 · 정춘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 경영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 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상장기업이 가업상속공제가 된 사례는 2023년 기준 이전 5년 간 단 4건에 불과해 실효성도 제한적이며,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사업승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상장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06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말한다"를 "말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 |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
|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 | |
| 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 | |
| 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 | |
|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 | |
| 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 | |
| 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 | |
| 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 |
|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 | |
| 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
|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 |
|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 |
|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 |
|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 | 말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
| 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 | 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 |
| 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 | 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 |
| 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 | 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
| 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
|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 |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 |
| 한도로 한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 ⑩ (생 략) | ② ~ ⑩ (현행과 같음) |